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 담당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연락: 성정옥 간사, 02-522-7284)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953, 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u>적극 반대</u>	별지 검토의견서와 같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1. 법안개요 및 제안이유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953, 이태규 의원 대표 발의, 이하 “개정안” 이라 함)은 제안이유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 보호 및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음.

2.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아동에 대한 폭력 및 학대를 금지하는 헌법 및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함

-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 이라 함) 제34조 제4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무를 특별히 천명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는 응당 지적·정신적·신체적·인격적 발전단계가 아직 성인의 안정성에 이르지 못

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헌법재판소는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의 하나라고 강조하였음(헌법재판소 2021. 3. 25. 선고 2018헌바388 결정).

- 2021년 개정된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1958년 민법 제정 이래로 단 한 차례의 개정되지 않은 채, 약 60년 동안 아동에게 가하는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제시되고 인정되어 온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었음.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하면서, 자녀에 대한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음.¹⁾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규정을 삭제해온 사회 분위기와 입법 흐름에 주목해야 함.

- 개정안에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행위에 대하여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유기 및 방임행위 등을 아동학대나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한 것은 아동에 대한 체벌과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헌법 제34조의 취지 및 아동학대를 정당화할 수 없도록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한 취지에 반함.

○ 아동에 대한 폭력 및 학대를 금지하는 국제인권규범의 취지에 반함

1) 2020. 1. 8.자 법무부 보도자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참조.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라 함)과 그 밖의 국제 인권 문서들은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적 완전성의 존중 및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할 당사국의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에서는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당사국이 모든 차별과 그 밖의 모든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아동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가족, 학교 및 그 밖의 환경에서 광범위하게 승인되거나 용인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처벌을 해결하고 근절하는 것은 사회 내의 모든 형태의 폭력을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밝히고 있음.²⁾
-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07. 3. 채택한 일반논평 제8호 「신체적 처벌 및 기타 잔인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서는 ‘체벌’을 “신체적 혹은 물리적 힘이 사용되고,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 혹은 불편함을 유발하도록 의도되는 모든 처벌”이라고 정의하고 있음.³⁾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당사국에 대하여 (i) 가정/가족 혹은 모든 환경에서 아동에 대한 일정 정도의 폭력(그 예로 “적당한” 혹은 “알맞은” 징벌이나 교정)을 허용하는 모든 규정을 제거하여야 하며, (ii) 일부 국가에서 체벌은 특히 학교와 그 밖의 시설에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에 대한 규제와 함께 허용되어 왔으나 그러한 규정은 철폐되어야 하며, (iii) 적용 가능한 분야별 법률(예를 들어 가

2) CRC/C/GC/8, para. 2-3.

3) CRC/C/GC/8, para. 11.

죽법, 교육법, 모든 형태의 대안 돌봄과 사법 체제에 대한 법, 고용법)이 관련 상황에서 폭력의 사용을 명백히 금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차별의 분명하고 무조건적인 금지를 달성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⁴⁾

- 특히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3·4차 심의에서 ‘가정, 학교 및 대안돌봄 환경에서 차별이 여전히 성행한다는 우려를 반복하면서, 가정, 학교 및 모든 기관에서 차별이 일체 금지될 수 있도록 이를 명문화하는 입법 조치를 취하고, 차별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대중 교육 캠페인 실시 및 차별 신고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음.⁵⁾ 제5·6차 심의에서도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차별이 합법이라는 점을 우려하면서,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차별” 및 “훈육적 (disciplinary) 처벌”을 포함한 모든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함.⁶⁾
-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 확보를 위한 감시기구인 인권위원회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고문방지협약」에 관한 고문방지위원회 역시 가정 및 학교에서의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아동의 존엄성 존중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가정 및 학교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 금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⁷⁾ UN 국제인권위원회들을 비롯하여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유럽인권재판소 및 유럽 사회권 위원회, 미주인권법원 및 미주인권위원회,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등도 아동에 대한 차별, 그것이 비록 부모의 훈육적 목적을 전

4) CRC/C/GC/8 para. 30-35, 39.

5) CRC/C/KOR/3-4, para. 42-43.

6) CRC/C/KOR/5-6, para. 26-27.

7) 장민영, “가정 및 학교에서의 아동차별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분석 및 국내법 검토, 중앙법학회(2013), 19-21 쪽.

제로 한 가정내 체벌이라 할지라도 금지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음.⁸⁾

- 개정안은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과 학대를 금지하고 어떠한 목적(‘알맞은’, ‘적당한’ 또는 훈육적 목적)으로든 아동에 대하여 일정 정도의 체벌을 허용하는 모든 규정을 제거해야 한다는 국제인권규범의 강력한 권고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함.

○ 학생의 행복추구권 및 학습권 침해

-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 금지행위의 위반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 개정이유는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교원의 대부분이 학생의 문제행동 및 교권 침해에 대한 교실 질서유지 권한을 부여해줄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점, 교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위축시키고 결국 전체 학생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음.
-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신적 학대와 방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학생이 학대행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될 수 있고, 안전한 환경에서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저해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학생의 행복추구권, 즉 “각자가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할 권리로 인격적 삶의 기본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일반적 인격권, 자신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얻기 위해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인 일반적

8) 이노홍, “아동의 권리와 가정내 아동체벌금지에 관한 헌법적 고찰”,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2015), 131-132쪽.

- 행동자유권(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등 참조)” 및 학습권을 제한함.
-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다 같이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국민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참조).” 라는 입장이고, 대법원 또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교원의 수업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학생의 학습권은 개개 교원들의 정상을 벗어난 행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함.
 - 일응 개정안의 목적은 학습권 보호의 외형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교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권한의 강화에 있고, 교원의 수업권 보장 필요성이 있더라도 법률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학생을 학대·방임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예외를 두는 것은 오히려 학습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 이미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원의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 인지(위법성), 이에 “고의”가 있는지(구성요건)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학생의 행복추구권 및 학습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행위를 구성하는 일부의 사실인 ‘학생생활지도’ 행위라면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를 구성하는 나머지 요소에 관하여 나아가 조사·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므로, 결과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학생의 행복추구권과 학습권을 제한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함.
 - 또한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추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안

이 교원의 수업권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고, 분쟁이 지속되는 기간동안 학생의 학습권을 중대하게 제약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학생이 교원의 위법한 학대행위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어 법익 균형성에도 반함.

- 따라서 개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학생의 행복추구권과 학습권을 침해함.

○ 유사 직역 종사자 및 학생의 평등권 침해

-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함.
- 「초·중등교육법」상 교원들과 동일하게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생활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교사, 「영유아보육법」상 보육 교직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교습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상 교원 등 여타의 교육·보육주체에 관하여는 이러한 예외를 허용하는 사례가 없음. 상술하였듯 친권자의 경우 생활에 대한 일상적 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나 오히려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였음.
- 학생의 문제행동 교정, 교실 질서유지의 필요는 교육·보육기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특정 교원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내지 제6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개의 사안별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육·보육기관의 종류에 따라 법률 적용 요건의 차이를 둘 합리적 이유가 없음.
- 오히려 「초·중등교육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교원은 직무를 수행하면

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그 직무의 특성에 비추어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 점 또한 유치원 교사, 보육 교직원, 학원의 교습자 등 유사 직역 종사자와 동일함.

- 즉, 개정안은 아동의 교육자라는 동일한 비교집단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상 교원과 그 외의 교육자를 차별취급하고, 같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하여는 마땅히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신분상 지위를 이유로 처벌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여 국가 형벌권 집행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함.
- 이는 또한 초·중등학생과 여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 사이에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부터의 보호 수준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등을 부여함으로써 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함.

○ 개정안의 체계정당성위반

- 개정안은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에 의한 금지행위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중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인한 책임을 지되, ‘과실’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인한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음.
-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리로(헌재 2005. 6. 30. 2004헌바40, 2005헌바24(병합) 참조), 이는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적 요청임.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내지 제6호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라면 고의 또는 중과실을 불문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해서는 안 됨. 교육은 학생인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함’ 이 목적이고(「교육기본법」 제2조), 개정안이 언급하는 제1항의 생활지도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아동학대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은 정당한 생활지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이는 ‘정당하지 않으며 아동학대에 해당함. 즉 교육과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면 그 자체로 교육의 실패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개정안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의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므로 문언 그 자체에 모순이 있음.
- 만일 ‘정당한 생활지도’ 로 인해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무리하여 전제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경과실에 의한 아동학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과의 정합성이 떨어짐.
- 「형법」 제14조는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만 과실범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의 위반은 과실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즉, 아동학대는 애초에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생활지도로 인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고의에 의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고, 과실인 경우에는 그것이 중과실이든 경과실이든 범죄로 처벌하지 않음.
- 대법원은 아동학대에서의 고의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

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다고 정하려는 개정안은 고의범인 아동학대의 구성요건과 전혀 맞지 않음. 아동학대범죄가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거나, 정당한 생활지도라면 그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위계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자칫 비아동의 입장에서 단순 실수로 축소시킬 우려가 있음.
- ‘중과실에 의한 생활지도’ 책임을 아동학대로 인한 형사책임이 아니라 국가배상책임이라고 보더라도 개정안은 실효성이 없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나 공무원수탁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이나 공무원수탁사인에게 구상하도록 하고 있음. 대다수의 국공립교원이나 공무원수탁사인인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구상할 책임을 지고 있고, 경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따라서 개정안으로 인한 국공립교원 및 공무원수탁사인이 져야 하는 국가배상책임의 구상 범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
- 따라서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의 근거가 되는 원칙과 금지행위를 규정된 취지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하므로 법률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됨.

○ 정당행위 판단의 중복

- 개정안 이전에도 이미 대법원은 교원의 지도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교사의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라고 판시함(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 법원에서는 이미 교사의 지도행위를 비교형량을 통해 정당행위로 인정하여 위법성이을 조각되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동일한 의미의 규정을 추가하였을 뿐 실익이 없음.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아동학대 여부가 아니라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를 다투게 되므로 아동학대 판단의 혼란만 가중하고 있음.

○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개입 필요성

- 개정안은 교원의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라는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요건만을 충족한다고 볼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내지 제6호의 금지행위를 구성하는 나머지 객관적 사실, 학생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학생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학생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학생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일체의 조사와 판단을 면할 수 있도록 함.
- 헌법재판소는 아동은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피해를 호소할 능력이 미약하므로 아동학대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은 쉽게 은폐되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아동의 성장, 발달에 영구적 손상을 초래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국가나 사회가 아동학대를 조기에 진단하고 개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정함(헌법재판소 2021. 3. 25. 선고 2018헌바388 결정).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교원의 생활지도의 아동학대범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국가가 해당 사안에 개입하여 판단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하여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일률적으로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간주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배치됨.

○ 갈등상황에서 학생의 참여 배제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교내 비폭력 의사소통 및 갈등중재를 증진하고,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참여형 아동양육형태를 촉진할 것, 폭력과 학대 신고를 장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⁹⁾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안적인 교육방법을 장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¹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학교에서의 교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 교원의 생활지도로 인하여 교원과 학생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교내 의사소통을 통한 갈등해결을 지향하여야 하고,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참여의 형태로 하는 것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함.

9) CTC/C/KOR/CO/5-6, para. 27.

10) 국가인권위원회 2017. 5. 15.자 결정.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 6차 통합 국가보고서 안에 대한 의견 표명”.

- 개정안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교내 갈등중재보다는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만을 따지는 상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갈등상황에서 학생의 참여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 개정안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배치되고, 교원의 보호에는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학생의 권리를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큼.

○ 이 개정안이 우리 사회에 던질 파급과 영향력에 대한 우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는 영역은 매우 작거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마치 이 법으로 인하여 학교라는 공간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예외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음. 개정안은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체계 마련 및 지원 강화가 아니라 교실에서의 권력을 회복하고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를 허용하는 권한의 부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교사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은 교사의 개인적인 권위와 교실에서의 권력으로 학생을 통제하는 과거의 교육 현실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러움. 개정안은 학생 인권과 인권 의식을 후퇴시킬 뿐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을 교사 개인의 역량이나 책임과 의무로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음.함.
- 본 개정안 아동학대 면책 규정은 교사의 인권이나 학교에서의 노동권을 학생인권을 대립하는 구도로 설정하고 그러한 인식을 더욱 강화함. 개정안의 도입 취지는 결국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교권을 침해한다’는 잘못된 시각을 바탕으로 두고 있음.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악의적 민원

과 고소를 남발하는 사례가 반복' 되고 있다고 밝혀, 학교에서의 아동학대의 신고 주체들을 대부분 허위 고소 내지 악의적 신고자로 상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들이 아동학대신고를 하게 되는 맥락은 다른 권리 구제 수단이 없다는 현실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교사가 겪는 어려움은 아동인 학생들을 보호하는 신고체계 및 아동학대를 처벌하는 법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님에도, 개정안은 학생에게 아동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교사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아동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교사가 각종 쟁송을 통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착시현상을 가져옴. 그러나 “정당한 생활지도” 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한 추가적인 갈등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갈등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결국 형사고소 후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증폭시킬 우려가 있음.

○ 결론 및 실질적 대안의 마련 필요성

- 개정안은 위 검토내용과 같이, 아동에 대한 폭력 및 학대를 금지하는 헌법 및 관련 법령의 취지에 명백히 반함.
- 특히 헌법상 평등원칙 및 체계정당성원리에 위반되며, 학생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도 위반되는 심각한 법률상의 흠결을 가지고 있음.
- 또한 개정안의 수혜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는 교사에게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는 법률로서 그 실효성도 없음.
- 무엇보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자칫 학교안에서의 체벌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아동학대는 학교에서든 가

정에서든 장소를 불문하고 금지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학교 안에서의 아동학대와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가 같은 행위라도 그 발생영역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퍼뜨릴 우려가 있음.

-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점 역시 교사가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음. 다만 이와 같은 심리적 불편함은 「초·중등교육법」이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이 아니라, 오히려 교사의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실시, 아동학대 및 학생·학부모와의 갈등상황에 대한 명확한 대응메뉴얼의 확립 및 시행, 이를 위한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갈등조정 체계의 마련, 교원에 대하여 행정적, 제도적 지원으로 해소해야 함.